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최혁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34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5.

발 의 자 : 최혁진 · 김문수 · 임미애
김용민 · 김우영 · 전진숙
정혜경 · 윤준병 · 윤후덕
조계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연 1회 평가하도록 하고,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해임 또는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경영실적 평가 시 경영성과 및 재무건전성 등 일정한 평가 요소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운영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례적인 평가 체계와는 별도로 기관 운영상 특정한 시점이나 상황에 대응하여 경영실적을 탄력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, 기관장이 소속 임직원의 업무 수행과 근무기강 전반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·감독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,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기관장 취임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나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특별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기관장 해임 건의 사유에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관리·감독 소홀을 명시하며, 경영실적 평가에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 성과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48조의2 신설 등).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2호 중 “제48조”를 “제48조 및 제48조의2”로, “평가”를 “평가 및 특별경영실적 평가”로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관리·감독을 현저히 소홀히 하여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”로 한다.

제48조제5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성과

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8조의2(특별경영실적 평가)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별도로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공기업·준정부기관에 대하여 특별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1. 기관장 임명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초기 경영성과 및 경영목표 이행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재무건전성 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등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특별경영실적 평가의 실시기준, 방법, 절차 및 특별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)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1. ~ 11. (생략)</p> <p>12. <u>제48조의</u> 규정에 따른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<u>평가</u> 등</p> <p>13. ~ 17. (생략)</p> <p>제22조(해임 요청 등) ① 이사회는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<u>경우</u>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2. <u>제48조 및 제48조의2</u>-----</p> <p>-----<u>평가 및 특별경영실적 평가</u>---</p> <p>13. ~ 17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2조(해임 요청 등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경우 또는 소속 임직원</u>에 대한 관리·감독을 현저히 소홀히 하여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</p>

② · ③ (생략)
 제48조(경영실적 평가) ① ~ ④
 (생략)
 ⑤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
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
 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재정
 경제부장관이 정하되, 공기업·
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
 호의 사항이 평가에 반영될 수
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.

1. ~ 6. (생략)

<신설>

7. (생략)

⑥ ~ ⑩ (생략)

<신설>

우-----

 -----.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 제48조(경영실적 평가) ① ~ ④
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 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및
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
전을 위한 성과

8. (현행 제7호와 같음)

⑥ ~ ⑩ (현행과 같음)

제48조의2(특별경영실적 평가) ①
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
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에는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
 평가와 별도로 운영위원회의
 심의·의결을 거쳐 공기업·준

정부기관에 대하여 특별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1. 기관장 임명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초기 경영성과 및 경영목표 이행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재무건전성 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등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특별경영실적 평가의 실시기준, 방법, 절차 및 특별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